

# 2021년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도시재생분야 창업팀사전선발 모집 공고(안)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예비 사회적 기업가’의 창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2021년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사전선발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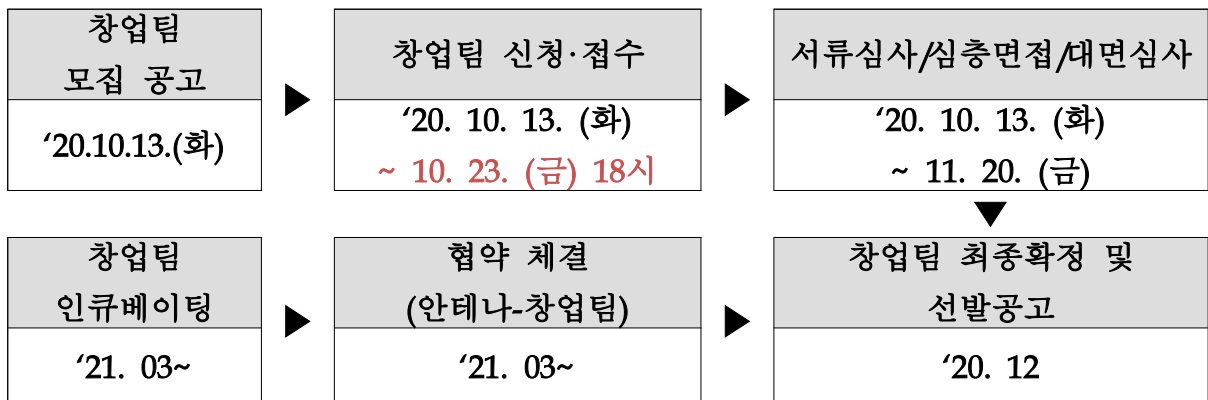
2020년 10월 13일  
사회적기업 (주)안테나

## 1 사업 개요

### □ 사업목적

- 사회적 목적 실현 및 사업화 등 창업의 전 과정을 지원하여 사회문제를 창의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는 사회적기업가 육성
  -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실제 사회적기업 창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창업공간 및 창업자금, 교육·멘토링 등 지원

### □ 추진절차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규모) 7팀 내외

□ 지원내용

- (창업공간) 창업활동에 필요한 업무공간, 기본 사무집기 제공
- (창업자금) 운영경비, 사업모델 개발비 등 1천만원에서 5천만원 범위 내 차등지급(평균 30백만원 내외)
  - \* (창업자금 사용범위) 상품화 개발비, 홍보 및 마케팅비, 기자재구입비 등
  - (사업비 배정) '21년 본 선발 창업팀 선정 후 일괄 1천만원 협약('21.3월 예정) → 중간평가('21.5~7월)를 통해서 최종 사업비 확정
  - \* 창업지원기관의 필요에 따라 중간평가를 2회차로 실시하여 사업비를 배정할 수 있음
  - (사업비 교부) 창업지원기관 교부기준에 따라 일정기간 집행 예정금액 사전 신청 → 적정성 여부 검토 후 승인 → 교부
  - \* 사업비 교부 기간은 주, 월, 분기 등 등 창업지원기관별 상이하며, 사전 신청시 창업팀은 집행 계획서 및 기타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자세한 사항은 운영지침 및 회계처리기준 참조)
- (멘토링) 창업과정의 상시적 상담을 제공하는 ①담임멘토링과 경영 및 사업아이템 등 분야별 전문가의 ②전문멘토링 제공
- (교육) 사회적기업가 정신 및 창업과정에 필요한 교육 제공
- (자원연계·사후관리) 지역, 민간 등 외부 자원연계를 연계 하고 교육·컨설팅 등 후속지원 프로그램 제공

## □ 지원방식

- 사회적기업가 창업 및 육성 인프라를 보유한 창업지원기관을 통해서 상시적·전문적 창업 인큐베이팅 서비스 제공
- '20년 운영중인 권역 및 특화, 재도전 창업지원기관 30개소\*중 1개소를 선택하여 신청하여 기관별 선정 및 인큐베이팅 진행
- \* 권역 및 특화, 재도전 창업지원기관 현황(☞ 붙임1 참조)
- 해당 창업지원기관이 '21년 창업지원기관으로 선정되지 않을 경우, 인근 지역 창업지원기관에 배정

## □ 창업팀 협약

- (협약체결) '21년 창업팀 본 모집 선정 완료 이 후('21.3월 예정) 지원협약 체결

## □ 기타사항

- 본 공고 이후 본 사업 운영지침 변경 등으로 사업 참여 및 수행과 관련한 규정이 변경 될 경우 사전선발 창업팀에도 해당 내용을 적용할 수 있음

## □ 문의처(사회적기업 (주)안테나)

- 전화 : 02-2069-1668
- 이메일 : ant3na@ant3na.com

## □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2020. 10. 13. (화) ~ 10. 23. (금) 18:00 까지

○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 ① (온라인) 이메일 접수

- 구비서류를 갖추어 이메일로 송부([ant3na@ant3na.com](mailto:ant3na@ant3na.com))
- 메일제목 : [창업팀명] 2021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참가신청서 제출
- 마감시간 이후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받지 않으며, 마감시간 이후 서류 내용 수정 불가

## ② (오프라인) 구비서류를 갖추어 희망하는 창업지원기관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 신청 시 신청서류 겹봉투에 '2021년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공모 신청 서류' 표기
- 우편 및 방문 접수는 '20. 10. 23.(금) 18:00 도착분까지 유효
-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미산로5길 11 1층(성산동 250-40)

\* 신청 전 인큐베이팅 희망 창업지원기관을 통해 신청서, 사업화 계획서 등에 대한 작성방법 및 육성사업 관련 상담 가능

\* 신청 시 반드시 희망하고자 하는 창업지원기관\*을 1개소를 선택하여 신청(두 개 이상 창업지원기관 중복 신청 불가)

## □ 신청자격

○ 혁신적인 사회적기업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지속적인 활동 의지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 3인 이상으로 구성

\* 창업팀은 신청시 반드시 3인 이상 구성이 완료되어야 하며, 구성원 전원은 다음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을 갖추어야 함

1. **(창업준비팀)** 창업팀 모집 마감일 기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설립 등록을 아니한 경우로서, 본 사업 협약기간 내에 창업이 가능한 경우

\* 창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시행령에 따라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에 해당하는 조직형태로 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의미함

\*\* 과거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의 대표로 참여한 자는 창업준비팀 구성원으로 참여 불가

2. **(초기창업팀)** 2019년 1월 1일 이후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로서, 본 사업 협약기간 내에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에 해당하는 조직 형태로 전환 후,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을 목표로 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개시일,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 과거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의 대표로 참여한 자는 초기창업팀 구성원으로 참여 불가

3. 「고등교육법」 제14조에서 정한 교원은 협약 이전 소속기관장 명의의 창업승낙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자의 선정은 취소된다.

4. 팀 구성원중 다른 사업 또는 단체의 임원(대표)은 육성사업에 참여가 불가하나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가능  
가.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인가받은 사회적협동

조합이 신청하는 경우

나. 비영리단체 임원으로서 정기적인 급여성 대가를 받고 있지 않는 경우

\* 타 사업자등록 여부 확인을 위해 **본 사업 신청시 모든 팀원은 사업자 등록 사실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발급)

○ 모든 창업팀은 협약기간 내에 개인사업자를 제외한 법인으로 창업이 가능해야 함

## □ 신청 제외 대상

○ 관련 법령상 창업이 불가능한 경우

○ 신청서, 사업화 계획서 등 본 사업관련 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 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자(시효 소멸자는 제외)

\* 최종선정 및 협약 후 계좌개설 불가 등이 확인될 경우 협약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단 협약체결 전 완납하는 경우는 가능)

○ 동일한 창업 아이디어로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현금성 창업 지원금을 받은 자로, 타 사업과 지원기간(협약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 중복사업 중 하나의 사업에서만 현금성 창업지원금을 받는 경우 제외

\* 유사 창업지원사업 중복참여여부 확인 및 중복참여자 선정 제외는 창업팀 선정 시 실시하며, 선정 후 본 사업에 참여 중인 창업팀이 유사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의 중복 참여 여부는 해당 유사 창업지원사업 주관기관의 판단에 따름

○ 고용노동부, 진흥원 및 기타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또는 기업

□ 제출서류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운영지침 참조, 공고문 첨부파일 활용)

-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참여신청서
- 창업팀 개요 및 구성표
- 사업화 계획서

<참고: 사업화 계획서 작성 요령>

- \* 사업화 계획서는 평가기준(운영지침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작성하되 아래의 내용을 포함할 것
  - ①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 & 소셜 미션 ② 사회적기업가 정신 및 역량
  - ③ 창업 아이템 & 사업화 개요 ④ 사업화 계획 ⑤ 기대효과
- \* 신청 사업비는 [운영지침 별표 제4호 창업팀 사업비 구성 기준]에 따라 지원 한도 범위 내에서 사업추진 일정 등을 고려하여 소요 내역 작성 (단, 창업팀의 인건비(팀 구성원 포함)는 자부담 원칙)
- \* 창업에 필요한 사업비 중 정부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 소요 비용 및 충당 방법 등을 기재

- 창업기업현황(초기창업팀 및 재도전창업팀 제출)
- 수상경력 및 정부재정지원 현황
- 개인정보 수집, 조회 및 활용 동의서
- 창업 및 유지 동의 협약서
- 사회적경제기업 관련 인·지정서(재도전창업팀 제출)
- 사업자등록 증명 관련 서류(홈텍스 홈페이지 - 민원증명)
  - 팀 대표 및 팀원은 총사업자등록내역을 제출하되, 창업사실이 없어 총사업자등록내역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자등록증명(기간 최근 5년으로 설정)을 제출
  - \* 홈텍스 사업자등록 증명 서류 발급 방법(붙임 1 참조)
- 기타 사실관계 입증자료

\* 제출서류 원본은 창업팀 서류심사 후, 심층면접 대상자에 한하여 창업지원기관에 직접 제출해야 함

#### 4

### 창업팀 선정 절차

#### □ 선정 절차 및 일정(예정)

- (3단계 심사) 서류심사를 통해 심층면접 대상자 선정 → 심층면접(교육 포함) → 대면심사 → 최종선정

단계	일정	비고
모집공고	'20.10.13. (화)	사회적기업 (주)안테나
↓		
신청·접수	'20.10.13.(화)~ 10.23.(금)	온·오프라인 접수
↓		
우선순위 창업팀 선정	서류심사	심 사 : '20.10.26.(월)~ 10.30.(금) 결과공고 : '20.11.06.(금)
	↓	
	심층면접 (교육 포함)  및 대면심사	'20. 11.17.(화) 예정  * 심층면접 교육 수수료 - 8시간 이상(총 시간의 80% 이상 참여) - 대표 포함 팀원 2명이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대표는 전체시간 필수 이수, 팀원은 교차 참여 가능) -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 예정
↓		
최종선정	'20. 12월	진흥원, 중앙운영위원회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평가기준) 소셜미션, 사회적기업가 자질, 창업 아이템, 사업 실현 가능성,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소셜미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의 명확성 및 중요성</li> <li>· 문제상황 및 원인분석의 적절성, 핵심 이해관계자 정의 및 해당 문제에 대한 기존 해결방법 분석 여부 등</li> <li>· 사업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가능성</li> </ul>
사회적기업가적 자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기업가 정신, 신청 동기, 창업의지(전념도) 등</li> <li>· 사업 분야 관련 경력·전문성, 네트워크 및 자원연계 능력 등</li> <li>· 효과적 팀 구성 여부</li> </ul>
창업 아이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이템의 독창성·차별성·경쟁력·혁신성</li> <li>· 아이템 관련 유사모델·경쟁모델 분석·조사 수준</li> </ul>
사업 실현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계획의 구체성·타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 분석의 타당성</li> <li>- 일정별 추진계획의 적정성</li> <li>- 자금 조달 및 운용 계획의 타당성(자부담 포함)</li> <li>-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의 구체성</li> </ul> </li> <li>· 사업모델의 수익성 및 지속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익창출구조의 타당성, 매출·비용 예상</li> <li>- 시장진입 가능성 및 마케팅 전략의 구체성</li> <li>- 경쟁력(가격경쟁력, 기술력 등) 확보 방안</li> </ul> </li> <li>· 사업진행 시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li> </ul>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출 가능한 사회적 가치(사회적 임팩트)</li> <li>· 사업의 경제적 효과 및 지속가능성</li> </ul>

※ 분야(권역, 특화, 재도전), 창업팀 특성 등에 따라 진흥원의 승인 하에 30% 배점 내에서 창업지원기관별 평가기준 조정 가능

- (중간·최종 평가) 창업팀은 사전 진단 컨설팅(타당성 검토) 및 중간평가 결과를 통해 사업비를 차등 지급

-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 결과 및 사업 중단, 미흡 판정 시 참여 제한·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평가 및 제재 등 자세한 사항은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운영지침 참조

## □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함
- 참여신청서의 내용을 허위기재 또는 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정부사업 참여제한·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 최종선정 및 협약체결 이후 해당 내용의 허위기재 또는 누락 등이 확인된 경우 포함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본 공고문 및 운영지침 내용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해당 창업팀에 있음
- 상기 공고사항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문의처

- 지원내용 및 신청·접수, 육성사업 진행 관련
  -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지원기관 (☞ 붙임1 참조)
- 온라인 접수 시스템: 1661-4006
- 기타 사업 관련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창업지원팀(031-697-771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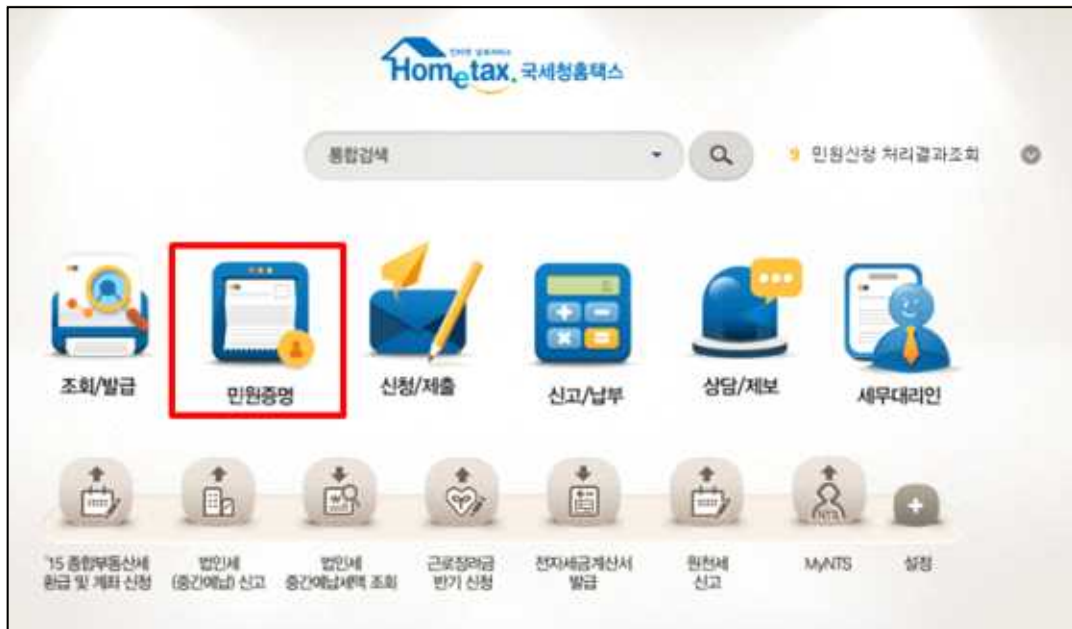
연번	구분	업종	기관명	배정팀	육성팀	
1	서울 인천 경기	여성	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세상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동탄지성로 470번길 34, 상가동 2층	070-4763-0130	
2			(사)피피엘	서울특별시 성동구 상원1길 26 서울숲A타워 9층 911호	02-3789-0023	
3			사회연대은행(사) 함께만드는세상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 산학관 LG소셜캠퍼스 504호	02-2280-3368	
4			(사)홍익경제연구소+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479, 6층	032-446-9491	
5			사회적협동조합 세이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30길36 동부여성발전센터 3층 육성사업룸	070-7601-6006	
6			글로벌	사회복지법인 열매나눔재단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20길 37, 302호	02-2665-0718
7			IT, 도시재생	에스이임파워 사회적협동조합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도림로 13길 51	070-5057-3620
8			관광	한국사회적기업협의회 공제사업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색로 43, 서대문구 사회적경제 마을센터 2층 206호	070-5099-1673
9			재도전	(재)함께일하는재단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5, SD타워 3층	02-330-0724
10	강원 충청		(사)강원도사회적경제 지원센터+1	강원도 원주시 상지대길 83 상지대학교 한방의료기기산업진흥센터 205호	033-749-351~2	
11			사회적협동조합 세상만사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로 10번길 9, 2층	042-320-9540	
12			한남대학교	대전광역시 동구 한남로 8번길 14-9 한남대학교 사회적경제지원단	042-629-7169	
13			(사)충남사회경제 네트워크	충청남도 아산시 번영로 86번길 27-3, 3층	041-415-2012 (내선2번)	
14			(사)충북시민재단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흥덕로 159, 2층	043-221-0311	
15	대구 경북	융합기술	(사)공동체디자인연구소	대구광역시 중구 북성로 102, 2층	053-957-5556	
16			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 생명과학대학 2호관 2403호	053-850-4770	
17			금오공과대학교 산학협력단+1	경상북도 구미시 대학로 61 벤처창업관 313호	054-478-6750	
18	부산 울산 경남	디자인 제조	(재)부산디자인센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로 120, 해운대기술교육원 2층	051-745-3203	
19			(사)부산사회적경제 네트워크+1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63, 1501-2호	051-803-8388	
20			(사)사회적기업연구원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시아드대로 107, 2층	051-504-0275	
21			사회적협동조합 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 7-13	055-286-6379	
22			모두의경제 사회적협동조합	울산광역시 중구 신기2길 11	052-267-6176	
23	광주 전라 제주	사회적협동조합 살림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43, 7층	062-383-4747		
24			광주대학교 산학협력단	광주광역시 남구 효덕로 277, 광주대학교 인성관 3층 사회적기업사업단	062-670-2794	
25			(사)상생나무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82, 3층	061-281-0201	
26			(재)전라북도경제통상 진흥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165 1층	064-726-4843	
27			(사)제주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과정로 164, 4- 5층	063-711-2110	
28	도시재생	(주)안테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 428-1, 2층	02-2069-1667		
29	농어촌·산림	(사)퍼스트경영기술연구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교서로 8-2, 2층	043-264-9979		
30	재도전	(사)한국마이크로 크레딧 신나는조합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107-39, 사조빌딩 2층 200호	02-365-0330		

## 붙임2

## 사업자 등록 증명 서류 발급 방법

○ 신청하고자 하는 개인별 공인인증서 필요하며, 온라인 발급시 약 3시간 정도 시간 소요

①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www.hometax.go.kr](http://www.hometax.go.kr)) → 민원증명



② 민원증명 사실증명신청

### 민원증명

세무서 방문 없이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증명발급을 신청하여 PC에서 프린터로 출력하는 민원증명 서비스입니다.

- 현 서비스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4조2의 규정을 따릅니다.

- 민원증명
  - 국세증명신청
  - 사실증명신청
- 민원증명 원본확인 (수요처 조회)

#### 민원증명 발급신청

연중무휴 09:00 ~ 24:00

#### 민원증명 이용절차

- 01 홈택스 로그인  
공인인증서 또는 아이디/비밀번호로 로그인합니다.
- 02 민원증명신청  
사업자등록번호가 필요한 증명일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목록 중 발급받고자 하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합니다.
- 03 민원증명 처리결과
- 04 발급완료 후 프린터 출력

### ③ 화면 하단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 신청하기

사실증명(공동사업자내역)	신청하기	공동사업자 등록(지분) 또는 탈퇴 등에 대해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합니다.	개인용 : 주민등록번호 법인용 : 본점(지점)사업자등록번호
사실증명(사업자단위과세 승인시 지점사업자등록번호 직권말소)	신청하기	사업자단위과세 승인을 받음에 따라 종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말소되었음을 확인하고자하는 경우 이용합니다.	
사실증명(전용계좌개설여부)	신청하기	법인이 「상속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른 전용계좌개설을 신고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동의 정보내역)	신청하기	민원인이 근무한 폐업 사업체의 폐업일, 업종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사실증명(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환급사실여부)	신청하기	수출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공제 또는 환급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신청하기	사업자등록 내역을 확인하고자하는 경우 이용합니다.	주민등록번호

### ③-1 화면 상단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 신청하기

<span style="color: blue;">+</span> 사실증명발급			
민원사무명	발급신청	이용목적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입력구분
사실증명(체납내역)	신청하기	체납 내역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합니다.	개인용 : 주민등록번호 법인용 : 본점(지점)사업자등록번호
사실증명(주택자금 등 소득공제사실여부)	신청하기	주택자금 등 소득공제 사실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합니다.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신청하기	종합소득세 신고사실, 근로(사업, 연금, 종교인)소득으로 연말경산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거나 근로(사업, 연금, 종교인)소득으로 연말경산한 사실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증명」을 신청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신청하기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합니다.	
사실증명(사업자등록변경내역)	신청하기	상호, 소재지, 업종 변경내역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합니다.	